

第61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7月 3日(水) 11時 04分

場 所 本會議場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96 풍수해 대책 보고 청취의 건

附議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安哲柱議員 外 4人 發議)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1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1面
4. '96 풍수해 대책 보고 청취의 건 (宣相善議員 外 4人 發議)1面

(11時04分 開議)

○議員 金憲中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會議 開議를 宣布합니다. 특히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가 늘 얘기하는 그리고 千相旭議員이 발의한 술잔 鍾 자를 쇠북 '鐘' 자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보고를 받고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 1.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安哲柱議員 外 4人 發議)
- 2.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 3.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 4.'96 풍수해 대책 보고 청취의 건 (宣相善議員

外 4人 發議)

(11時 05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시종로구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6 풍수해 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運營委員會 羅在岩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羅在岩 運營委員會 委員長 羅在岩 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61회 임시회를 끝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이 만기되고 다음 회기부터는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난해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돼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토론해 가면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무런 대과없이 마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부덕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이 한 일도 없이 마무리를 하다 보니 기초의원이기도 합니다만 종로의 재정자립도로 볼 때 운영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마는 다음 맡게 되는 운영위원장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되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신 區廳長님 이하 副區廳長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안철주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그동안 시민행정위원회 의안처리 건수가 도시건설위원회 의안처리 건수보다 무려 6.5배의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타 업무에도 같은 비율로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재무국 소관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하고, 도시건설위원회 명칭을 재무건설위원회로 변경하며, 새로 개원하는 의회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의 차기 위원회 구성 시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최초 임시회 및 차기 상임위원회 임기 개시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임위원회 구성 시점에 대한 이론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규정기간 내 위원회 구성을 못할 경우는 우리 의원 스스로 우리가 개정한 조례에 의거 족쇄를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다만, 회의 소집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일부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憲中 羅在岩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市民行政委員會 玄壽漢 委員長!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玄壽漢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현수한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중 의장님, 홍승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민행정위원장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도 이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여러 의원들이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가게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중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로구지방공무원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 안전점검과 환경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산업과에 가스안전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관리요원을 증원하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의회협력계를 총무과에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이는 각종 위험 시설물의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며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존보호권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憲中 玄壽漢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 委員長!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李炯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李炯述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玄壽漢 시민행정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역시 임기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동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은 장마철을 맞이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 및 정비상태, 취약시설물 점검 및 정비상태 등에 대하여 구청에서 수립한 자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자 선상선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96 풍수해 대책보고 청취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본 청취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수해 대책기간은 1996. 6. 15부터 10. 15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대책반은 27개 반에 1,051명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수방자재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대비 도상 및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하수도를 정비하였으며,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조치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6. 7.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6월 19일 · 안철주의원 외 4인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7월 1일)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 要旨

(제안설명자: 안철주의원)

가. 提案理由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중 일부를 조정하여 의안, 청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기타안건 처리 등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기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상임위원회 명칭 중 “도시건설위원회”를 “재무건설위원회”로 개정함
(안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제2호 및 동항 제3호)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중 재무국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3조제2항제2호)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3조제2항제3호)
- 상임위원장의 임기 제5조제1항 중 단서규정 삭제(안 제5조제1항)
- 최초의 상임위원과 임기만료 상임위원의 선임 규정 조문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윤주채, 장소수)

가. 주요내용

- 시민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간의 소관 국 조정
- 도시건설위원회의 명칭 변경
- 개원 의회나 임기만료 위원회의 차기 위원회 구성 시점을 명문화

나. 관련사항

-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1) 시민행정위원회

- 가. 3실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라. 시민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2) 도시건설위원회

- 가.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 ①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다만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때에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위원회별 안전처리 현황> '91.4.15~'96.5. 31

계	시 민 행 정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소 계	3 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 계	도시정비국	건설국
246	213	8	88	75	32	10	33	23	10

다. 검토의견

- 제5조의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라는 단서규정은 차기 상임위원 선출 시점에 대한 지나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어 이의 삭제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럴 경우 상임위원회 공백 상태 초래 소지도 있음
- 제10조의 ①, ②항 신설은 상임위원회 구성 시점에 대한 이론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규정기간내 위원회 구성을 못할 경우는 의원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 경과규정의 ‘이 조례 시행 전 선임된 상임위원은 본조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은 본조례 개정 공포 전(의결만 되고 확정이 안된 상태) 상임위원 및 위원장 선출은 적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한 규정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동안 소회를 집약한 발전적 안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이병문위원, 이형술위원, 박문배위원, 김이환위원, 정창희위원)
- 어떤 자치구는 재무국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왜 도시건설위원회로 되어 있는지?
 - 제5조2항 단서규정 삭제시 차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의 공백상태 해결 방안은?
 - 위원회별 소관 예산의 비율은?
 - 위원회별 위원조정 여부는?
 - 우리 자치구 의회와 유사한 타자치구 의회의 위원회 구성 현황은?
 - 도시건설위원회를 재무건설위원회로 꼭 명칭을 개정해야 되는지?
- (답변자: 안철주의원)
- 5년간 각 위원회별 의안, 예산, 사무감사, 기타 안전 처리 현황을 분석한 바 재무국 소관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회별 예산 비율은 시민행정위원회가 67%, 도시건설위원회가 33%입니다.
- 재무국 소관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위원조정은 현재로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의 심의 금액이 3억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재무국의 의안처리 건수는 앞으로 감소될 추세입니다.
- 상임위원회가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의 의회는 중구, 용산, 서대문, 동작, 서초구로 우리구를 포함하여 모두 6개 구의 회입니다.
- 건설이란 용어는 도시건설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를 뺐으며, 직제서열상 재무국이 도시정비국의 위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로 한 것입니다.

5. 討論 要旨: 이형술위원

- 제10조제2항 신설규정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회의 소집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 함

6. 修正案의 要旨

- 가. 제안자: 이형술위원
- 나. 수정이유: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되지 않을시 위원회별 업무공백이 우려됨
- 다. 수정주요골자: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다만, 회의소집이 되지않아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審査結果: 「수정안가결」

- 표결
- 이형술위원의 동의안: 찬성 4명, 기권 4명
-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

8.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6. 7.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6월 17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7월 1일)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오병한)

가. 提案理由

지방재난관리기구 · 인력보강 지침 및 구의회와 의회협력강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순찰 업무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이관
- 의회협력계 신설
-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가. 주요골자

- 감사실 순찰 업무를 민방위과로 이관(안 전지도계 신설)
- 기획예산과 의회협력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의회협력계 신설)

나. 기구개편 내용

- 계 신설 등은 구청장 임의사항으로 참고 사항임
- 과 이상은 의회 의결 대상임

○기획예산과

- 기획계(의회협력 업무)
- 예산계
- 법제계
- 전산통계계
- 전산운영계

○감사실

- 감사계
- 조사계
- 민원관리계
- 환경순찰계 (☆폐지)

○산업과

- 상공계
- 유통지도계
- 연료계

○건축과

- 건축관리계
- 건축 1계
- 건축 2계

⇒ 총무과

- 총무계
- 인사계
- 동정계
- 의회협력계(★신설)

⇒ 민 방 위
재난관리과

- 민방위계획계
- 교육훈련계
- 병사계
- 재난관리계
- 안전지도계(★신설)
- 환경순찰

⇒ 산업과

- 상공계
- 유통지도계
- 가스연료계(◆명칭변경)

⇒ 건축과

- 건축관리계
- 건축 1계
- 건축 2계
- 영선계(★신설)

다. 관련법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③시·군·구의 국·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④국·실·과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내무부 승인사항〉

내무부 12200 - 321 ('96. 4. 29)

라. 검토의견

- 감사실의 환경순찰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여 종전 미관관리 위주의 환경순찰 업무에서 안전 위주의 환경순찰 업무로 발전적 개선을 도모하며
- 의회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폐지하였던 의회협력계를 총무과에 신설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하

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박문배위원, 천상욱위원, 홍기서위원, 안철주위원, 정창희위원)

○ 기구, 인원은 상급부서의 승인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할 용의는?

○ 현재의 안전진단 부서는?

○ 안전순찰대는 '96년 6월 1일 활동을 개시했고, 예산도 추경에 천만원을 반영, 이미 집행된 상태인데 본 조례의 7월 1일 소급적용은 잘 못된 것 아닌가?

○ 영선계 신설 요구는 의장님이하 의원들이 5년간 계속 주장한 것으로 근간에 이루어진 이유는?

○ 영선계가 하는 일은?

(답변자: 총무국장 오병한)

○ 신규채용은 예산 등의 효율적인 면이 있어 서울시에서 통합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에서 기능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계이하 조직은 구청장이 정원의 범위내에서 설치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생각하고 사전에 집행했습니다.
- 그 동안 건축과와의 계별 업무분담 조정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 공공청사 신축에 대한 설계, 시공상의 감독 업무 등을 합니다.

5. 討論 要旨: 없 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6. 7.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6월 19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7월 1일)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오병한)

가. 提案理由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종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 지도 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능력 강화 및 가스안전관리기능 확충을 위한 안전지도계(민

방위재난관리과)신설 및 산업과의 연료계(가스연료계)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정원 증원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종로구의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 (1113명→1118명)
 - 민방위재난관리과 - 4명 증
 - 6급 1명: 행정 · 건축
 - 7급 1명: 건축
 - 8급 2명: 행정 1명, 토목 1명
 - 산업과 - 1명 증
 - 7급 1명: 화공직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가. 개정사유

-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정원 4명 증원
 - 6급 : 1명(행정 또는 건축)
 - 7급 : 1명(건축)
 - 8급 : 2명(행정 1, 토목 1)
- 산업과 연료계를 가스연료계로 함에 따른 1명 증원
 - 7급 : 1명(화공)

나. 관련법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

-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총정원의 확정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무부장관 승인〉

- 내무 12200 - 337('96. 5. 2)

라. 검토의견

-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계 설치 및 가스계 설치로 인한 보강으로
- 관계법규에 의한 승인 절차 등을 거친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 의회협력계, 영선계 등 계 단위 인원 보강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아님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박문배위원, 천상욱위원, 홍기서위원, 안철주위원, 정창희위원)

- 정원113에서 118명으로 5명이 증원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 정원 증원중 안전지도계에 토목직이 일을 할 수 있는지?
- 증원 정원중 화공직 7급 1명이 있는데 기존에 화공직이 산업과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는지?
-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기능직, 고용직 보충 계획은?
- 종로구의 특성상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많은데 전기기사의 충원계획은?
(답변자: 총무국장 오병한)
- 조례가 개정되며 조례에 따라 증원할 계획입니다.
- 안전지도계는 재난방재를 위하여 도로, 축대 등은 토목직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가스계장이 화공직 별정 6급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기능직, 고용직 보충 계획은?
- 화재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직은 구청 건물에 관한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5. 討論 要旨: 없 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

'96. 풍수해대책 보고청취의 건
結 果 報 告 書

1996. 7.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6월 20일 ·
선상선의원의외 4인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년 7월 1일) 상
정 · 의결

2. 提案說明 要旨

(제안설명자: 건설국장 오종석)

가. 提案理由

금년도 풍수해대책 수립의 목적으로
첫째 예방중시 방재업무의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둘째 지역방재 체제의 구축으로 권한과 책
임이 일치하는 지역방재 역량강화
셋째 완벽한 수해 상황대처로 피해확산 방지

나. 主要骨子

- 풍수해 대책 기간: '96.6.15~10.15(4개월간)
- 대책반
 - 구 : 6개반 62명
 - 동 : 21개반 989명
- 근무체제 및 근무요령
 - 평상시 종합상황실 당직근무로 운영
 - 재해대책기간 중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구

- 상황전개에 따라 자동비상발령 체계를 원칙으로 4단계 근무 운영
-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자재
 - 포대류: 4종
 - 수방장비는 즉각적인 동원 가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 수방자재

포대류	묶음줄	말 목	비 널
11,770개	45타래	101본	3,439m

◎ 수방장비

계	양수기	트럭	준설기	유니목	페이로다	청소차
109	28	2	8	2	1	68

※ 우기 취약지역 2개소 배수펌프 설치

- 원남동 250(10hp×1대, 300m³/h)
- 창신동 452(15hp×1대, 480m³/h)

3. 質疑 및 答辯要旨

(질의자: 선상선위원, 김이환위원, 이병문위원, 김정대위원)

- 실제사항에 대비 교육회수 및 장비점검상태 구호물자 확보 보관상태는?
- 창신동 성곽도로 주변 위험건물이 있는데 사전예방대책은?
- 하수관로 378km 및 건물·담장이 현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누락된 사유는?
- 파년도 피해액 산출근거는?
- 금번 우리구 피해 상황 및 조치내용은?
(답변자: 건설국장 오종석)
- 금년 5월중 2회의 교육 및 도상·가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장비는 평창동 창고 및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건물은 건물주가 보수하여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동장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 낮은 지대 하수관 10~15% 정도를 정비한 것이며, 위험건물 및 담장은 각동에서 위험하다고 보고한 숫자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거 산출한 것입니다.
- 총 75주로 공원내 37주 임야내 18주 가로수 12주 기타 9주로서 어제까지 완전 복구하였습니다.

4.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

○議長 金憲中 李炯述 都市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그리고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開議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제2기 지방의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구의원님들 여러분께 저를 대표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축전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本會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散會)

○出席議員 21人

金憲中	安哲柱	李炳文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玄孝善	沈載得	李萬魯	鄭泰淳
李炯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洪起瑞	康來奎	金以煥	金正大
宣相善				

○出席 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權	哲
總 務 局 長	吳 炳	漢
財 務 局 長	金 誠	泰
市 民 局 長	金 賢	植
都 市 整 備 局 長	趙 學	來
建 設 局 長	吳 鍾	錫
保 健 所 長	李 星	世